

의 안 번 호	1658	【울산광역시 중구 재활용품수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20. 8. 28.(금)
- 나. 제출 자 : 안영호 의원 외 3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9. 1.(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9. 10.(목)

2. 제정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의 취약계층(노인·장애인·수급자)의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손수레,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, 경제적 자립을 통한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책무, 지원계획의 수립·실태조사, 지원대상자 선정 등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용품지원에 관한사항(안 제6조)
- 라. 교육, 시행규칙(안 제7조~제8조)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 다·라목(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등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제정안은 취약계층이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, 경제적 자립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큰 거 법 규

「 지방자치법 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, 2018. 12. 24.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 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-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 - 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 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 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 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 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 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